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한덕수 (행정안전부 소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20명(5급 2명, 6급 10명, 7급 8명)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2025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3항을 삭제한다.

별표 3 중 총계 “7,068”을 “7,088”로, 일반직 계 “7,067”을 “7,087”로, 3급 또는 4급 이하 “7,034”를 “7,054”로 한다.

별표 6 제2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3조(한시정원) ①·② 삭제 ③ <u>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6월 29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둔다.</u>	제43조(한시정원) <u><삭제></u>
④ ~ ⑪ (생략)	④ ~ ⑪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3]

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39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7,068</u>	<u>7,088</u>	+20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7,067</u>	<u>7,087</u>	+20
·	·	·	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7,034</u>	<u>7,054</u>	+20
·	·	·	
·	·	·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42